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단20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변론 종결 2020. 7. 16.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공동으로 2008. 7. 28. D을 대리한 E와 사이에 원고, C이 D으로부터 인천 남구 F건물 G호, H호(G호는 D 소유이고 H호는 D이 임차한 것이다)에 있는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3,000만 원은 2008. 8. 28.에 각 지급하고 용자금 1억 4,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계약금 일부는 J(E의 처이다) 계좌로 원고가 송금(1,500만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씨방과 관련하여 2008. 7. 22.경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C의 자녀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8. 7. 28.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30. 법무사이던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400만 원을, C의 자녀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C, L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C, L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106호로 'C, L은 이 사건 피씨방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합계 8,500만 원(= 60만 원 + 1,940만 원 + 1,500만 원 +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0. '원고가 이 사건 피씨방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이를 확정적으로 매수할 의사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G호와 H호 소유자가 다르거나 E이 D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부분은 원고와 C, L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 L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와 공동매수인으로 2008. 7. 28. D을 대리한 E와 사이에 피고 직원의 입회하에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피씨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같은 달 30. 피고가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매도인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당일 불참하여 당시 자리에 함께 동석한 L의 권유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예치해 두었는데, 그 후 원고는 위 피씨방은 D 단독 소유가 아니었고 E도 D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C 등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C 등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형사 고소에 따른 관련 형사 사건에서 C, L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이 사건에 제출된 C의 2019. 8. 13.자 진술서에는 '원고와 C은 이 사건 피씨방을 매수하되 원고가 C에게 매매대금을 투자하고 후일 매매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남기면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중개인 E 및 법무사인 피고 계좌로 1,5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입금 할테니 중개인 및 법무사에서 송금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매매계약시 C과 원고를 공동매수인으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관련 형사 사건에서 E, L, C의 각 증언의 취지는 '이 사건 피씨방 건물에 관한 감정가를 높여서 대출을 많이 받는 작업을 C이 하여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분배하고 다시 팔아서 차익을 얻는 투자를 하였다'는 것이다. ③ D으로부터 이 사건 피씨방 G호의 매도 및 H호의 임차권 양도를 위임받은 M은 위 형사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L과 매수자 N를 만나 위 소유권 및 임차권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실질적인 매수인인 N의 아들 O는 G호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N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원고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3,500만 원은 O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L이 O로부터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L이 5,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O로부터 받았음에도 위 돈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서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C은 위 형사 소송 과정에서 2015. 11. 18. 시흥시 P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가까운 2008. 8. 9. C과 함께 E으로부터 부천시 Q건물 R호 S당구장을 3억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C과 위 S당구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 8. 11.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⑥ 원고는, 피고가 C 측에 위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2008. 7. 30. 이후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C, L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피고를 상대로 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C 등과 함께 여러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씨방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앞으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C이 요청하면 위 돈을 송금하여 주도록 위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C 측에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금원을 C 측에 송금하는 등으로 소비한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다선